

# 업무교류협약서

(사)경기도물기업협의회와 경기도환경보전협회는 상호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경기도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(사)경기도물기업협의회와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정보의 공유 및 환경산업 관련 사업 및 업무 협력을 통해 사업성과를 도출하고 공동 활용함으로써 각 기관의 동반성장과 경기도의 환경개선 및 환경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존중과 신뢰)

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협약 내용에 포함된 협력 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한다.

## 제3조 (협력 분야)

- 가. 환경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, 기술개발과 활용 및 성과 연계, 공동 활용
- 나.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,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사업
- 다. 상호 인적/물적 인프라 교류 확대 및 활용 협력
- 라. 기타 경기도 환경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

제4조 (협력 기간 및 해지)

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기본 3년간 유효하며, 협약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. 단, 각 기관의 법적위상이 변하거나, 일방의 명시적인 해지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해지 할 수 있다.

제5조 (협약 변경)

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이 모두 합의하여 조정한다.

제6조 (비밀 유지)

본 협약을 통해 취득한 주요 정보는 사용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며,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외부에 누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.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하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2. 01. 27.



(사)경기도물기업협의회  
회 장 조 운 자



경기도환경보전협회  
회 장 김 중 찬